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World EXPO 2030
BUSAN, KOREA
World Expo 2030
Candidate

수신 관내 선사 및 대리점
(경유)

제목 해외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 준수 협조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양산업발전법」 제14조(항만국 검색)제1호에 따라 "해외어획물을 적재하여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48시간* 전에 입항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행정지시에 따라 입항 24시간 전에 입항신고 가능
3. 그럼에도 ①입항신고를 하지 않거나, ②관련 규정에 따른 입항신고 시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같은 법 제33조(벌칙)*에 따라 벌금 처분을 받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이와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입항신고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항만국 검색 입항신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여객선, 컨테이너 선박, 산적화물선이라도 아래 해당하는 어종을 적재한 경우 반드시 입항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가. 국제수산물기구가 어획증명에 관한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하여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경우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등 국제수산물기구가 관리하는 다랑어류, 이빨고기류 등을 적재한 경우 각 국제수산물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조업선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어획증명서

나. 외국과 체결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 어종을 적재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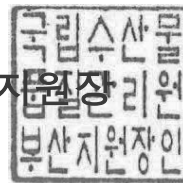
- 북서태평양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게류(Crab), 새우류(Shrimp)와 그 가공품이며,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러시아 수산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다. 해외수역에서 포획·채취한 공치, 긴가이석태 또는 영상가이석태를 적재한 경우

- 해당 어종을 포획·채취한 선박의 기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 (다만, 해당 선박의 총톤수가 20톤 미만인 경우 간편 어획증명서)

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부산지원



주무관

최가야

주무관

강효주

지원장

2023. 5. 26.

양호섭

협조자

시행 부산지원-3159

(2023. 5. 26.)

접수

우 48943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30번길 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 / <http://www.nfqs.go.kr>
산지원

전화번호 051-602-6032 팩스번호 051-602-6088 / chky877@korea.kr / 대국민 공개

"2030 부산세계박람회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